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목 차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의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제 8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제 9 조 세트

제 10 조 중립재

제 11 조 재료의 구분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원칙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 14 조 직접 운송

제2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 증명

-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 제 16 조 인증 수출자
- 제 17 조 수입요건
- 제 18 조 분할수입
-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 제 20 조 증빙서류
- 제 21 조 기록유지 요건
- 제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 제 23 조 통보
- 제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 제 25 조 분쟁해결
- 제 26 조 비밀유지
- 제 27 조 벌칙
-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제 6 절 관세협력

- 제 30 조 관세협력
-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제 7 절 최종조항

- 제 32 조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
- 제 33 조 주해
- 제 34 조 통과 또는 임시 보관 상품

부록 목록

-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부록 4 영역원칙의 면제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

품 등을 말한다.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덧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가. 제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또는

다.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로부터만 당사국에서 획득한 상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상품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덧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

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조된 상품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

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2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항은 HS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공은 하나의 당사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최종 상품의 생산자는 작업 또는 가공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¹⁾ 페인팅 및 광택 작업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곡물 및 쌀의 도정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제거, 탈각

1) “단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 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⁴⁾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단순한⁵⁾ 시험 및 측정
- 너. 동물의 도살. 또는
-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 1. 이 부속서 규정의 적용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은 HS의 품목분류표를 사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어야 한다.
- 2. HS의 일반통칙 제5조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상 상품에 포함된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에 포함된다.

제 8 조

2) 각주 1 참조

3) “단순히 혼합”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분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분자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각주 1 참조

5) 각주 1 참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

제 9 조

세 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중립재

상품의 원산지 결정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원산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에너지 및 연료

나. 공장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다. 기계 · 공구 · 틀 및 금형. 그리고

라.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그 밖의 상품

제 11 조

재료의 구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

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제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상 구별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기법은,

가.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관세당국의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증명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

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인증 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속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하고,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제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1.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상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신고되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에는 우편물세관신고서 또는 그 문서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된 일시적인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의 경우 그 상품의 총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4. 제1항의 목적상,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인 경우 그 상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 가격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통화 외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 당사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제 20 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접 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마.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제 21 조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제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제 23 조

통 보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원산지신고서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 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25 조

분쟁 해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6 조

비밀 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제 27 조

별 칙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자 또는 이 부속서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거래 상품이 운송도중에 당사국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는 해당 수출자는 수행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6 절

관세협력

제 30 조

관세협력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통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세관감시 및 검증기법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 관세전문가 및 세관공무원의 교류 그리고,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한 세관공무원 공동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1. 당사국들은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지정한 관세연락창구의 리스트를 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 이 부속서상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절

최종 조항

제 32 조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소위원회는 기술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또는 그 밖의 국제적 개발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준비 및 조정하고, 그 개정을 준비하며, 다음에 관하여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일반 규칙

나. 부록 2 및 4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다.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사안

3. 소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된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능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당사국의 대표가 합의된 기간동안 교대로 주재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첫 번째 소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의 직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에 교대로 한다.

7. 각 회의의 잠정의제는 의장이 모든 당사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반적으로 늦어도 회의 2주 전에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33 조

주 해

1. 당사국들은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내에서 이 부속서의 해석·적용 및 집행에 관한 주해에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합의된 주해를 각 내부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

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

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